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16
----------	-----

2021. 7. 20.(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5월 24일

나.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5월 25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 7월 13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청구조례 청구인 선지현 대표)

가. 제안이유

○ 청구취지 및 이유

-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 증진 및 향상에 기여

○ 대표자 및 청구일 : 김선혁 등 10인 / '20. 7. 22.

○ 청구인명부 서명 제출 : 13,551명

※ 청구요건 : '19년 말 기준 19세 이상 주민수의 1/100(13,422명)이상 서명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 및 지원대상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5조)

-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향상을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동안전 조사관**을 두도록 함(안 제8조)
-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협조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과 노동안전보건자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2조~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노학)

가. 제출배경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안전 보전에 대응하고,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하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일하는 주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을 증진·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15조,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 13,500여명의 주민 서명에 의해 제정 청구되었음
 - 청 구 일 : 2020. 7. 22.(수) → (공표) '20. 7. 29. / (서명기간) '20. 7. 29 ~ '21. 1. 28.
 - 청 구 자 : 김선혁(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등 10명
 - 청구인수 : 15,000명 (충족수 : 13,422명 / 유효서명인수 13,551명)

나) 조례안 청구 배경

- 고용노동부 2019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충청북도의 노동자수는 609,684명이고, 업무상 사고재해자수는 3,918명이며, 사망자수도 92명에 이르는 등 노동자인 다수 도민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일하고 있음

- 특히, 충북지역은 영세사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요양 재해율은 강원, 울산, 경남에 이어 4위, 업무상 사고 재해율은 강원에 이어 2위, 사망만인율은 강원, 충남, 경북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어 **노동자 안전이 '위험'한 지역임**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산업현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이나 위험 업종에 대해서 우선적인 교육, 예방, 보건, 감시 활동을 벌여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제정목적(안 제1조)

- 조례의 제정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일하는 주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을 증진·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9조2)에 의한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겠으나,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기능 등 규제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작동하여야** 하므로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요청한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해당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21.5.18. 공포, '21.11.19. 시행)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제정가능** 하나, 조례안 제2조, 제7조, 제10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부합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붙임 1)을 제시 받음

2)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21.5.18. 공포, ‘21.11.19.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신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산업재해’, ‘노동안전보건’, ‘노동자’, ‘사업주’, ‘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해 각각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은 ‘산업재해’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규정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3)의 정의를 참고 하였으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비해 좁게 규정되어 있음
- ‘노동안전보건’은 현재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조건과 환경정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의미하는 것임
- 조례안은 ‘노동안전보건’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단의 문구를 정의하고 있으나, 후단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위험요인과 관련된 괴롭힘, 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등을 포함하고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법 문언의 명확성, 명료성이 강조되는 정의 규정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안전 보건의 영역을 어디까지 포함시켜 정의할지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함
- 조례안의 '노동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요건(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과 유사하나, '**고용형태를 불문**'한다는 문구는 최근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춰 조례의 보호대상을 넓히기 위함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는 조례안 검토의견에서 노동자 정의가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의미로 해석 될 수 있음을 지적함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등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4)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 적용대상과 지원대상(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3조는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충청북도가 직접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충청북도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충청북도와 산하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와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충청북도가 직접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는 대상들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노동자 중에서도 열악한 처우와 고용 환경 속에서 산업재해의 발생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노동자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됨

4)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 도지사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5조는 도지사에게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수립, 실행계획 및 예산 마련, 노동안전보건협력체계 구축,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의 추진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중대재해 다발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영업정지와 허가 취소 요청을 도지사가 그대로 따르도록 한 안 제5조제4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5)의 규정보다 도지사의 재량권을 제한하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정되어야 함

마) 노동안전보건계획의 수립(안 제7조)

- 안 제7조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향상을 위해 4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이를 기초로 '충청북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충청북도 기본계획과 이와 연동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노동환경과 정책을 반영한 충청북도형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바) 노동안전조사관 및 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 제8조, 제11조)

- 안 제8조는 도지사에게 노동현장에서 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위해 노동안전조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노동자, 노동조합, 전문가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현재 법에서도 일정규모의 사업장에 대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사) 사업주의 협조(안 제9조)

- 안 제9조는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유해환경 작업 전 사전교육, 개인 안전관리장비 지급 및 보험 가입 등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조(사업주의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9조각 호의 일부 사항은 법령에 없는 의무 부과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의무사항이 아닌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해 도민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중대한 산업재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정할지, 어느 수준까지 도민의 요구가 있어야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에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 위임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위에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충청북도 사업장이 아닌 민간산업재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어 법적·현실적으로 조사 활동의 제약이 있음

자)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안 제12조~제20조)

- 조례안은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법규·정책·제도 개선 등 노동안전보건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자문위

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운영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충청북도의원,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게 됨
- 안 제19조에서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안전의 자문과 심의를 도모하고 있음
- 그 외 위원의 임기(안 제14조), 제척·기피·회피(안 제15조), 결격사유(안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17조), 회의(안 제18조), 수당(안 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한 것임



고용노동부

"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수신 충청북도지사(일자리정책과장)

(경유)

제목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1. 관련: 주민발의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요청(일자리정책과-3602, 2021.4.30.)
2. 위 호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재해 예방 관련 해당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시행할 예정('21.5.18. 공포 예정, '21.11.18 시행예정)이므로 붙임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제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조례안 ① 제2조(정의)에서 노동자, 사업주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 ② 제7조(노동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제2항5호 작업 중지권, 제10조(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 구성) 등 국가 사무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부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1부, 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장



근로감독관 김성진 과장 전령 2021. 5. 14. 이홍주

참조자

시행 산재예방지도과-4712 (2021. 5. 14.) 접수 일자리정책과-3960 (2021. 5. 14.)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분령동 1427 청주 / http://www.moel.go.kr/cheongju 지방합동청사) 4층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43-299-1310 팩스번호 043-299-1399 / jini5538@korea.kr / 대한민국 공개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정의 규정과 적용대상, 지원대상 등을 수정·삭제하여 법률과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문의 수정을 통해 입법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 수정내용

-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함(안 제1조, 제5조)
- “노동안전보건”, “노동자” 등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 적용대상의 범위를 도내 모든 사업과 사업장으로 하고 시행시기를 2021년 11월 19일로 함(안 제3조, 부칙)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 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안전지킴이로 변경하고 관련내용을 정비함(안 제11조)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수정안 포함) 1부. 끝.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716호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1년 7월 13일
제안자 : 이상식의원 외 5명

1. 수정이유

- 정의 규정과 적용대상, 지원대상 등을 수정·삭제하여 법률과 제도와
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문의 수정을 통해 입법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수정내용)

-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함(안 제1조, 제5조)
- “노동안전보건”, “노동자” 등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 적용대상의 범위를 도내 모든 사업과 사업장으로 하고 시행시기를
2021년 11월 19일로 함(안 제3조, 부칙)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 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안전지킴이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11조)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현장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안 제5조(수정 후 안 제4조) 제1항 중 “(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을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으로, “일하는 시민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실행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를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을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로, “구축”을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수정 후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3. 충청북도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
4. 충청북도형 사업장 위험·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
5. 충청북도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6.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7.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8.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9.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산재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산재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할 때 노동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

안 제8조(수정 후 안 제7조)의 제목을 “노동안전조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하고 개선하기”를 “조사하기”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을 “관련법령이나 조례”로, “점검하고 지도한다”를 “지도·점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안 제9조(수정 후 안 제8조)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로 “증진·향상”을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허용 등 협력
7.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에 하도급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참여 보장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안 제11조(수정 후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노동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방과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의 신고
2.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 또는 수행사업 활동 지도점검
3.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4. 기타 증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 관계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④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할 수 있다.

안 제12조(수정 후 안 제10조) 제1항 중 “일관성·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사 참여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을 “주요사항을”로, “설치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노동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안전보건의 기반 조성확대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안전보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3조(수정 후 안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안 제14조(수정 후 안 제12조) 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위원의”를 “전임위원 임기의”로 한다.

안 제16조(수정 후 안 제14조)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①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안 제21조(수정 후 안 제19조)의 제목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본문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방침”을 “규칙”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과 고용형태에 일의 미래가 불리울 노동안전보건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을 증진·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현장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노동안전보건은 기술 발전, 기후변화, 산업구조, 다양한 고용형태와 관련된 괴롭힘, 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등 변화하는 산업재해 영역의 사회심리학적 위험요인을 포함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원 안	수 정 안
3. <u>“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 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 는 기타 계약 등의 형태로 노 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u> 4. (생 략) 5. <u>“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 에서 노동안전보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 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u>	3. <u>“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 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 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 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 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 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u> 4. (제정안과 같음) 5. <u>“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 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전 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u>
<u>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은 다음 각 호 중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고용 및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다.</u> 1. <u>도 및 도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u> 2. <u>도 및 도 산하 기관, 자회사로 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 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u> 3. <u>도 및 도 산하기관으로부터 보 조금을 지급받거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u>	<u>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u>

원 안	수 정 안
<u>노동자, 해당 사업을 다시 위탁 받아 운영하는 업체 소속된 노동자(다중위탁)</u> <u>제4조(지원대상) 충청북도가 직접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상시 근로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u> <u>2. 화학·식품 제조업에 6개월 이하로 파견되는 단시간 및 단기계약 노동자</u> <u>3.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각종 배달종사자, 대리운전, 화물트럭기사 등)</u> <u>4. 토목 및 건설 현장</u> <u>5. 상·하수 관리, 청소, 경비 등 시설관리 노동자</u> <u>6. 외국인 이주 노동자</u> <u>7. 특성화고 실습 및 실습 노동자</u> <u>8. 그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으로 매년 충청북도가 정하는 노동자</u> <u>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일하는 시민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u>	<u>〈삭 제〉</u> <u>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u> <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 <u>-----노동자의</u> <u>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u>

원 안	수 정 안
<u>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실행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u> ② 도지사는 <u>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노동안전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③ 도지사는 <u>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u>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안전장비 및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u>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노동부의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요청을 받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의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	<u>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 <u>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u> ----- ----- ----- -----<u>마련</u>-----. ③ -----<u>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u>----- ----- ----- -----. <u><삭 제></u>
<u>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u> 제2장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u>제7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u>	<u>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정안과 같음)</u> 제2장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u>제6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원 안	수 정 안
②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3. 충청북도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 대책 마련(작업중지권 등) 4. 충청북도형 사업장 위험·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 5. 충청북도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6.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7.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구성 및 운영 8.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조사를 위한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9.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10.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기초로 ‘충청북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실행계획에는 산재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제4조 지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3. 충청북도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 대책 마련 4. 충청북도형 사업장 위험·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 5. 충청북도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6.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7.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8.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9.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산재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산재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 출자·출연기관

원안	수정안
<u>원대상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④ <u>도지사는 충청북도 노동안전지표를 반영하여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u> 제8조(노동안전조사관제) ① 도지사는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u>조사하고 개선하기</u>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둔다. ② (생략) ③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u>이 조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u>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u>점검</u>하고 지도한다. ④ <u>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 제9조(사업주의 협조) 제3조 본문의 <u>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1. ~ 4. (생략) 5. <u>노동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지원, 출입허용, 활동시간 보장 등 협력</u> 6. (생략)	<u>을 평가할 때 노동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u> 제7조(노동안전조사관) ① ----- ----- ---<u>조사하기</u>----- -----<u>할 수 있다.</u>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u>관련 법령이나 조례</u>----- ----- <u>지도</u>. <u>점검한다.</u> <u><삭 제></u> 제8조(사업주의 협조) <u>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u>----- -----<u>증진</u>----- ----- -----. 1. ~ 4. (제정안과 같음) 5. <u>노동안전지킴단의 사업장 출입허용 등 협력</u> 6. (제정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7. <u>하청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보장</u> 8. (생 략) 제10조(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u>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과 노동조합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② 도지사는 <u>사업장의 인허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유해물질 배출, 소음, 비산먼지, 오폐수, 공사장 주변 교통사고, 부실 시공 등과 관련하여 노동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해 노동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u> ③ 도지사는 <u>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도민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u>	7. <u>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에 하도급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참여 보장</u> 8. (제정안과 같음) <u><삭 제></u>

원 안	수 정 안
④ 제3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사에 따르는 권고안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조사 보고서(권고안 포함) 및 이행과정을 공식적인 공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에 대해 성실히 공개하여 사고 조사가 사회화되고 동일 재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충청북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노동자, 노동조합,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자격, 임기 및 임무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도지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등 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제9조(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노동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방과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의 신고 2.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 또는 수행사업 활동 지도점검 3.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4. 기타 증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 관계

원 안	수 정 안
④ <u>도지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며,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안전조사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u> 제3장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u>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사 참여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u> <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u>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u>	<u>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한다.</u> ③ <u>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u> <u>1.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u> <u>2.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u> <u>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u> <u>4.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u> ④ <u>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할 수 있다.</u> 제3장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u>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u> <u>-----주요사항을 -</u> <u>-----</u> <u>-----둔다.</u> <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u> <u>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u>

원 안	수 정 안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노동현장의 노동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식견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등 2.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생략)	2. 노동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안전보건의 기반 조성확대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안전보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임기) ① -----한 차례만----- --. ② -----전임위원 임기의-----.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정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16조(결격사유) ① <u>도지사</u>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4조(결격사유) <u>도지사</u> ----- ----- -----. 1. ~ 4. (제정안과 같음)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생략)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정안 과 같음)
제18조(회의) (생략)	제16조(회의) (제정안과 같음)
제19조(소위원회) (생 략)	제17조(소위원회) (제정안과 같음)
제20조(수당 등) (생 략)	제18조(수당 등) (제정안과 같음)
제21조(방침) <u>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방침으로 정한다.</u> 부 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19조(시행규칙) ----- <u>필요한-----규칙-----.</u> 부 칙 <u>이 조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u>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수정안 포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현장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노동안전보건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안전장비 및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제6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3. 충청북도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
4. 충청북도형 사업장 위험·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
5. 충청북도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6.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7.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8.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9.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산재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산재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할 때 노동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노동안전조사관) ① 도지사는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노동안전조사관의 자격 및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제8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조사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 및 활동시간 보장
7.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에 하도급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참여 보장
8.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의 협력

제9조(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노동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방과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의 신고
2.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 또는 수행사업 활동 지도점검
3.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4. 기타 증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 관계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④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노동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안전보건의 기반 조성확대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안전보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
-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전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결격사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